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장석 표결선포 예외규정 마련〉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46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홍배 · 윤준병 · 박정현 · 박희승 · 이용우 · 안호영
민병덕 · 김우영 · 김현정 · 김태선 · 박해철 · 고민정
강훈식 · 황명선 · 이연희 · 김한규 · 김태년 · 이수진
신영대 · 문정복 · 백혜련 · 추미애 · 김재원 · 전현희
서미화 의원(25인)

2. 제 안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 의안번호 : 644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현행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는 국회의장의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의 선포를 의장석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의장석 외의 장소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② (생략) <u><신설></u>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선포 규정을 예외로 한다.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생략) <u><신설></u>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선포 규정을 예외로 한다.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종전 「국회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²⁾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선포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선포의 장소는 제한하지 아니하였음.

위와 같이 선포 장소에 제한이 없음에 따라 과거 국회에서는 이른바 ‘날치기 통과’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1994년 12월에는 ‘199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여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본회의장 2층 기자석에서

1)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2) 「국회법」(2002. 3. 7. 법률 제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무선마이크로 가결을 선포하거나 1999년 1월 ‘경제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와 관련하여 국회부의장이 미리 준비한 핸드마이크와 의사봉을 이용하여 본회의장 통로에서 안건을 상정 및 가결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³⁾

이에 지난 제16대국회에서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안건의 처리를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2002. 3. 7.)을 통해 의장의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의 선포를 의장석에서 하도록 명문화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편, 지난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12월 4일 0시 47분에 본회의가 개의되었고, 같은 날 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제6197호)」이 상정되어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계엄군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못하였다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계엄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정상적 본회의 개의를 어려운 경우에도 국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의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의 선포 장소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유사시 국회의 입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3의 장소에서도 본회의 개의 및 의사결정(표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3) 이철호, 「국회 날치기 폭력사와 국회폭력 방지 방안」, 국가법연구 제8집 2호(2012. 8.), p.4

있고, 실제 과거 6·25 전쟁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본회의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2] 입법기·회기별 국회의사당 소재지⁴⁾

구 분	소 재 지	회 기
제 헌	중앙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국회(1948. 5. 31.) ~ 제7회국회(1950. 2. 26.)
제2대	문화극장 (경북 대구시)	제8회국회(1950. 7. 27.) ~ 제8회국회(1950. 8. 17.)
	문화극장 (부산시)	제8회국회(1950. 9. 1.) ~ 제8회국회(1950. 10. 16.)
	중앙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8회국회(1950. 10. 7.) ~ 제8회국회(1950. 11. 26.)
	시민회관별관 (서울특별시 중구)	제9회국회(1950. 12. 8.) ~ 제10회국회(1951. 1. 3.)
	부산극장 (경남 부산시)	제10회국회(1951. 1. 4.) ~ 제11회국회(1951. 6. 11.)
	무덕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1회국회(1951. 6. 27.) ~ 제16회국회(정부 환도 전까지)
	중앙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6회국회(1953. 9. 21.) ~ 제18회국회(1954. 5. 30.)
제3~5대	시민회관별관 (서울특별시 중구)	제19회국회(1954. 6. 9.) ~ 제38회국회(1961. 5. 16.)
제6~9대	시민회관별관 (서울특별시 중구)	제39회국회(1963. 12. 1.) ~ 제93회국회(1975. 4. 9.)
제9~22대	국회의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94회국회(1975. 9. 22.) ~ 제422회국회(현재.)

다만, 국회가 계엄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본회의를 개의할 필요성은 개정안에 따른 계엄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제헌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의 자료는 지난 2020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의정자료집을 참고하였고, 제21대 및 제22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자체적으로 반영하였음(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2020, p.1341).

문 의 처
02)6788-5016